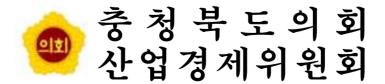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46회 임시회 '16. 3. 15. (화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……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343 2016.3.15.(화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3일

(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원장 차선세)

가. 제안이유

○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기존 [별지서식]에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- 나. 주요내용
- 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2호서식], [별지 제4호서식] 작성시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정
- 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 - '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'은 '개인정보 보호법'에 따라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없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 의견 요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- O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2호서식]과 [별지 제4호서식]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| 직 무 육 성 품 종 신 고 서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|--|
| 신 청 인 (직무육성자) | ①성 | 명 | | | | ②생년월일 | | | | |
| | 3주 | 소 | | | ④ 전화번호 | | | | | |
| | 소 | 속 | ⑤현 | 재 | | | 직 급 | ⑥현 | 재 | |
| | <u>ə.</u> | | ⑦육성 | 당시 | | | <u>ਜ</u> | ⑧육성 | 당시 | |
| ⑨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| | | | | | | | | | |
| ⑩품 종 의 명 칭 | | | | | | | | | | |
| ⑪공동육성여부 | □ 공동 | | □ 단독 | | | (2) 本] | 분 | | | |
| 공동육성자 | ⑬성 | 명 | | | | | (외국인은 국적) | | | |
| | 15주 | 소 | | | | | 16전 5 | 화 번 호 | | |
| 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 | | | | | | |
| | 신고인 | | |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 |
|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| | | | | | | | | | |
| 첨부서류 :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 | | | | | | | | | | |

[별지 제2호서식)

| 접수인란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수 의 계 약 신 청 서 | | | | | | | | |
| 신청인 | ①성 | 명 | | | | ② <mark>생년월일</mark> (외국인은 국적) | | |
| | ③주 | 소 | | | | ④전화번호 | | |
| 도유품종 보호권의표시 | ⑤품 보호 등록번 | 종 권 호 | | | | ⑥품종의 명칭 | | |
| ⑦처 분 의 종 류 | | □ 양도 □전용실시권 설정 □통상실시권 허락 | | | | | | |
| 실 시 권 범 위 | | ⑧실시기간 | | | | | | |
| | | 9실시지역 | | | | | | |
| | | ⑩실시내용 | | | | | | |
| 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| | | | | | | | |
| ⑩수 의 계 약 사 유 | | | | | | | | |
| 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| | | |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 | | | | |
|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 | | |
|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| | | | | | | | |
| 구비서류 | | | | | | 수 수 료 | | |
| 1.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.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| | | | | | 없음 | | |

| [별지 제4호서식]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|--|
| 접수인란 | | | | | | | | |
| | | 견 적 | 서 | | | | | |
| 제출인 | ①성 명 | | ② (외 | <mark>생년월일</mark> 국인은 국적) | | | | |
| | ③주 소 | | (4) ⁷ | 전화번호 | | | | |
| 도유품종 보호권의표시 |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| | · | | | | | |
| | ⑥품종의 명칭 | | | | | | | |
| ⑦양도대금 또는 견 적 - | - 실시료의 금 액 | | | | | | | |
| ⑧ 견적금액 산정 명세서 | 근거 및 | 별 첨 | | | | | | |
| 「충청북도 종자 | 산업의 육성과 직무육 | 삼성품종 등 지원 조려 | 』 제9조에 | 따라 위와 같이 신청 | 청합니다. | | | |
| | | 년 월 | 일 | | | | | |
| | | 신청인 | |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

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관련법령 발췌

- □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)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

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-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-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하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

- 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6.>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8.6.>